

# 자 동 차 관 리 법 시 행 규 칙 개 정 안

법 제 처 심 사 전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24호, 2023. 9. 14. 공포, 2025. 3. 15.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라 사용을 폐지한 대형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사용검사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이륜자동차 튜닝검사 도입에 따라 당초 튜닝승인 후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던 절차를 삭제하려는 것임.

##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4호 중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3조에 따라”로, “경우”를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및 이륜자동차 사용검사증명서(대형 이륜자동차”로 한다.

제108조제3항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해당 이륜자동차의 튜닝된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아야”를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튜닝검사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의2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륜자동차 튜닝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08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0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법 제77조제9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①-----<br>-----<br>-----<br>-----<br>-----<br>-----<br>-----<br>-----<br>-----<br>-----<br>-----. |
| 1. ~ 2의2. (생략)                                                                                                                                                                                                                 | 1. ~ 2의2. (현행과 같음)                                                                                                         |
| 3. 삭제                                                                                                                                                                                                                          |                                                                                                                            |
| 4. <u>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u>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u>경우에</u> 한한다)                                                                                                                                                | 4. <u>제103조에 따라</u> -----<br>-----<br>-----<br>----- <u>경우에는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및 이륜자동차 사용검사증명서</u> (대형 이륜자동차-----<br>-----      |

② ~ ④ (생략)

제108조(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은 자는 튜닝승인  
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  
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지정  
된 장소에서 해당 이륜자동차의  
튜닝된 구조·장치가 안전기준  
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3항  
에도 불구하고 튜닝승인을 받은  
자에게 이륜자동차의 도난·사  
고발생·폐차·압류 또는 장기  
간의 정비 등 제3항에 따른 기  
간(이하 이 조에서 “확인기간”  
이라 한다) 내에 이륜자동차를  
제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5일  
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기  
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그 확  
인기간 내에 별지 제74호의2서  
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8조(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륜  
자동차 튜닝검사를 받아야 ---  
-----  
-----  
-----.

<삭 제>

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

2.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4항에 따라 확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튜닝승인서에 연장기간을 기재하여 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삭 제>

제108조의2(이륜자동차의 튜닝 결과 보고 및 확인)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08조제3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튜닝된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튜닝 사항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적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삭 제>

② 튜닝승인을 받은 자는 이륜자동차의 튜닝된 구조·장치가 제108조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소에서 해당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다시 확인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1. 제2항에 따라 재확인한 이륜자동차의 튜닝된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한 경우

2. 제2항에 따라 재확인한 이륜자동차의 튜닝된 구조·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한 경우

3. 튜닝승인을 받은 자가 제2항  
에 따라 10일 이내에 재확인  
을 받지 않은 경우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1. 제1항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튜닝된 구조·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  
고 보고받은 경우: 별책 4의  
이륜자동차대장에 그 튜닝사  
실을 기재할 것

2.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실을 보고받은 경우: 튜닝된  
이륜자동차를 튜닝승인된 내  
용과 같도록 하거나 튜닝 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09조에 따른 정비  
명령과 제110조에 따른 운행  
정지명령을 할 것